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20 호

2003 년 6 월 13 일 금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24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1호선)실시계획인가고시)-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25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구월4동1269번지
일원공영주차장건설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8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4호(보상계획열람공고(간석역남광장부근도로확장공사))-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5호(제조담배소매인지정취소공고)----- 2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6호(불용품매각재입찰공고)-----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90호(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
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91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
및이의신청공고(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34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3-7호(의약품판매업허가취소에따
른청문통지서공시송달공고)----- 3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2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1호선)“보르네오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666) 및 건설과(☎ 453-25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 5. 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57-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3-1호선)
 - (2) 명 칭 : 보르네오 부근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3-1호선 : 폭원(B)=6m, 연장L=4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3. 4. ~ 200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8. 첨 부 : 관계도서(개재 생략)

토 지 조 서

【고잔동 보르네오 부근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잔여 면적	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고잔	257-41	구	289.0	119.0	170.0	289.0	강혜영 홍성강 김정웅 이갑철 김기희	동춘동925-7삼환@116-604 동춘동924-3삼성@5-101 관교동13-7쌍용@2-309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5-4 서울 구로구 신림동645 신도림3차동아@302-1101			
2	고잔	257-83	잡	134.0	134.0	0	134.0	김정웅	관교동13-7쌍용@2-309			
3	고잔	257-80	잡	167.0	167.0	0	167.0	김기희	서울구로구신림동645 신도림3차동아@302-1101			
4	고잔	257-79	구	600.0	600.0	0	600.0	최무출 유성열 이경숙 정계년	부천원미구도당동49-8 부천원미구송의동130-17 서울양천구신정동327목동신 시가지@1304-902 성남분당구수내동51파크타운 107-205			
5	고잔	257-78	구	325.0	325.0	0	325.0	김민진	남춘동649풍림@304-202			
6	고잔	257-77	구	324.0	324.0	0	324.0	이갑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5-4			
7	고잔	257-76	구	317.0	317.0	0	317.0	노진태	서울구로구개봉동407 -11원풍@30-205			

토 지 조 서

【고잔동 보르네오 부근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유 면적	권익 면적	잔여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고잔	257-76	구	317.0	317.0	0	김기회	서울구로구신도림동645 신도림3차동아@302-1101			
8	고잔	257-75	구	325.0	325.0	0	이병두	제주시화북일동12-1 화북4@407-505			
9	고잔	257-81	구	183.0	183.0	0	남동구청	남동구 만수동 1008			
10	고잔	257-82	장	140.0	140.0	0	이우식	경기성남시분당구수내동 76푸른마을505-2001	(주) 국민 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	근저 당권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될 시 개별 관계법의 절차를 이행토록 할 것.
2. 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는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분할과 지목변경(도로)후 1필지로 토지합병하고 사업완료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3. 사업구간에 편입된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지장물포함)는 필히 협의 취득 또는 매수 절차를 이행한후 사업시행 토록 할 것.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토록 할 것.
5.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행한후 사업 새행토록 하고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토록 할 것.
6. 공사계획평면대로 시행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시공 할 것.
7.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예정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기간연장등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8.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2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구월4동 1269번지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666) 및 교통과(☎ 453-2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 6. 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2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로기반시설물(공영주차장)

(2) 명 칭 : “구월4동 1269번지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874.8㎡(장애인-2면, 일반인-30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3. 4. ~ 200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토 지 조 서

사업명 : 구월4동 1269번지일원 공영주차장건설공사

번호	소 재 지		면 적			공 용			실 제 이 용 사 항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전여	지분	임야	도로	대지	잡종지	성명	주 소	구분	성명	주 소	
1	구월동	1269-19	대	136.4	136.4	0				136.4		남동구					
2	구월동	1324-4	도	2,092.6	127.5	1,965.1			127.5			인천시					
3	구월동	1269	대	243.6	243.6	0				243.6		이기수	서울 은평구 북면 79-22				
4	구월동	1269-1	대	103.0	103.0	0				103.0		박해임	남구 주안공				
5	구월동	1269-2	대	157.3	157.3	0				157.3		정광수 외1인	906-1.주공@ 만수동 1086-1 이석@101동				
6	구월동	349-945	대	1.0	1.0	0				1.0		남동구					
7	구월동	349-659	대	46.0	46.0	0				46.0		남동구					
8	구월동	349-662	대	60.0	60.0	0				60.0		남동구					

건 물 조 서 (1)

사업명 : 구월4동 1269번지일원 공영주차장건설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m2)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면적	잔여면적			종목	성명	
1.	구월동	349-662 (구지번 : 349-13)	30.4		시멘트블럭	주 택	오정자	민수동 111-269번지	
			6.84		시멘트블럭	주 택			
			12.95		시멘트블럭	주 택			
			1.85		시멘트블럭	주 택			
			22.05		시멘트블럭	주 택			
			3.15		시멘트블럭	주 택			
			1.54		시멘트블럭	창고, 화장실			
			14.93		시멘트블럭	주 택			
			6.67		시멘트블럭	주 택			
			2.44		시멘트블럭	주 택			
		1식	철 재	대 문					
	</								

건 물 조 서 (6)

사업명 : 구월4동 1269번지일원 공영주차장건설공사

번 호	소재지		면적 (m2)			구조	용도	소재		비고
	동명	지번	면적	잔여면적	총면적			성명	주소	
1.	구월동	1269-2	112.82		112.82	시멘트블럭	주택	정광수 정미영	만수동 1086-1 이석@ 101동 1803호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 105동 1001호	
			14.83		14.83	편라이트	창고			
			1식		1식	목재	대문			
총 계			127.65							

건 물 조 서 (7)

사업명 : 구월4동 1269번지인원 공영주차장건설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m2)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면적	잔여면적	총면적			성명	주소	
1.	구월동	349-659	9.12		9.12	시멘트블럭	주택	남동구청	구월동 349-659번지	
			6.6		6.6	시멘트블럭	주택			
			10.5		10.5	시멘트블럭	주택			
총계			26.2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4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간석역 남광장부근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3. 6.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간석역 남광장부근 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 L=422.40M, B=10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03. 8.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간석동 387-2외7필지
 - 지 장 물 : 상기 지번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후 현금보상
 - 지장물 즉시 철거 조건으로 지급
 - 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소멸된 지장물은 보상 불가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3. 6. 10. - 6. 24.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12.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 있으신 분은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 장 물 조 서

입원 번호	소재지	면적 (㎡)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편입면적	잔여면적	전체면적	성명	주소
1	간석동 394-19	5.7	7.1	12.8	오경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4-19
		5.4	-	5.4		
2	간석동 394-1	23.3	-	23.3	박달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445-2
3	간석동 394-1	22.5	-	22.5	박달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445-3
4	간석동 394-1	24.0	-	24.0	박달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445-4
5	간석동 393-19	325.8	-	325.8	㈜한국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475-8
6	간석동 392	18.0	-	18.0	신민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0
		15.7	-	15.7		
7	간석동 392	21.4	-	21.4	서정길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2-1 신세계 APT 4/1104호
		1EA	-	1EA		
		1주	-	1주		
		1EA	-	1EA		
		1EA	-	1EA		
		45.3	-	45.3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등명	지번	편입면적	잔여면적	전체면적			성명	주소	
8	간석동	392	10.3	-	10.3	블럭조	담장	김양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3	
9	간석동	392	24.5	-	24.5	철크스	담장	김순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4	
10	간석동	392	60.8	-	60.8	콘크리트포장	바닥			
			16.5	-	16.5	철크스	담장	이복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8	
			16.8	-	16.8	블럭조	담장			
			8.8	-	8.8	콘크리트포장	바닥			
11	간석동	392	1EA	-	1EA	철재	대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22.5	-	22.5	블럭조	담장	김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9	
			1EA	-	1EA	철재	출입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8.8	-	8.8	콘크리트포장	바닥			
			3주	-	3주	과실수	수목			
			1EA	-	1EA	뽕포및차단기	뽕포실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면적	잔여면적	전체면적			성명	주소	
12	간석동	392	16.5	-	16.5	블럭조	담장	이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13	
			1EA	-	1EA	철재	출입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22.0	-	22.0	콘크리트포장	바닥			
			3주	-	3주		수목			
			1EA	-	1EA		정화조			
13	간석동	392	14.9	-	14.9	블럭조	담장	조광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14	
			1EA	-	1EA	철재	출입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24.0	-	24.0	콘크리트포장	바닥			
			7주	-	7주	수목	화단			
			10.0	-	10.0	목조	개집			
			1EA	-	1EA	별포및차단기	별포실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필지면적	잔여면적	전체면적			성명	주소	
14	간석동	392	15.3	-	15.3	적벽돌조	담장	홍성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18	
			24.1	-	24.1	블럭조	담장			
			1EA	-	1EA	철재	출입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19.3	-	19.3	수목	화단			
			11.6	-	11.6	콘크리트포장	비단			
15	간석동	392	1EA	-	1EA	펄프및차단기	펄프실	조정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19	
			36.0	-	36.0		담장			
			6주	-	6주		수목			
16	간석동	387	1EA	-	1EA		정화조	쉬한국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75-8	
			417.6	-	417.6	블럭조	담장			
					이	하	여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5호

담배소매인지정취소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리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담배소매인지정 취소 현황】

지정 번호	업소명	소재지	성명	거주지	위반사항	관련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3441	성자유통	간석동224-115	임지숙	간석동37-93 창산그린빌D/B02	장기간 담배불매	담배사업법제17 조제2항제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3771	대명정보	구월동1177-1 기원빌딩1층	신경호	연수 신학동 361-3	"	"	"	
3530	루 비	구월동1370-2	유관옥	구월동 1109-2 옥빌딩 202호	"	"	"	
2764	상상과일 아 채	간석동606-10	김동선	부평 부기동498-5 주공(0)307/602	"	"	"	
3498	굿모닝 마 트	구월동1241-1 지하층	권 옥	대전 유성 원나동383 신원타운103/904	"	"	"	
3145	갈럭시 호텔매점	간석동275-1	갈럭시 호텔	간석동275-1	"	"	"	
1851	영수슈퍼	구월동1300-11	황정애	연수 동춘동282	"	"	"	
661	(휴 업)	만수동109-126	유우수	만수동111-114 동우빌딩 402호	"	"	"	
3116	인 우 비디오	만수동109-15 인우상가 107호	오현자	구월동1248-7 근영세론빌 202호	"	"	"	
3132	신한마트	만수동6-43 신한프라자 1층	최부혁	만수동3-73 공식(0) 71/802	"	"	"	
2586	해나마트	만수동 946	이명구	만수동943-34 신동아대 11/201	"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6호

불용품매각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사항

가. 매각대상 물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취득가격	취득연수	내구연한	비고
2320 -009	소형화물	포터 더블캡	대	1	7,808천원	'95.01.20	6년	요정 비품
2320 -009	소형화물	점보 타이탄	대	1	7,632천원	'95.10.23	6년	요정 비품
2310 -001	구급차	엠블런스	대	1	10,606천원	'95.01.20	6년	요정 비품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 2003. 06. 23. 18:00

입찰등록장소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다. 입찰일시 : 2003. 06. 24. 15:00

입찰장소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2.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입찰 마감일까지 우리구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

4. 입찰등록 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의양식)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인감증명(입찰참가신청위임장)을
첨부한 위임장

5.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예정가격이상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납부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의 금고귀속사유

-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 기일내 체결하지 않을

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국고귀속조치 합니다

8.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로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현물인도 및 명의이전을 완료한다

마. 만일 위 기일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구 일반회계에 귀속조치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응찰자는 물품을 확인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여 응찰하고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 재산관리팀(032-453-223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3. 6. 11.

인천광역시남동구청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 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함.
-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
(조례안제7조제3호 신설 및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제10조제2항)
- 자치단체간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등을 상호 통보토
록 함(조례안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조례안제1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 7. 3일까지 인천광
역시 남동구청장(참조: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연락번호 : 453 - 240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

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91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단과 관련하여 간석4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6. 13 ~ 2003. 7. 12(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7. 12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6.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간석동	178-2	사무실	컨테이너	18	이중재	남동구 간석동 366	
			작업장	철골천막	109.7			
			작업장	목조합판	90.3			
			작업장	철골함석	51.6			
			작업장	철골스레트	33.5			
			창고	철골천막	54.4			
			창고	철골목조	44.8			
			바닥	콘크리트	400			
			담장	함석	87.2			
2	간석동	360-7	창고	목조합판	22.23	염상섭	남동구 간석동 360-7	
			화장실	목조합판	3.38			
3	간석동	178-2	작업장	철골천막(블록)	103	손남영	남동구 간석동 392-17	
			작업장	목조합판	41			
			창고	목조천막	30.1			
			창고	목조합판	27.1			
			바닥	콘크리트	100			
4	간석동	399-9	방	벽돌슬라브	26.9	김옥희	남동구 구월 1315-12 평화빌라 102호	
			방	벽돌스레트	26.5			
			상가	벽돌슬라브	20.7			
			상가	벽돌스레트	14.8			
			거실	벽돌슬라브	9.8			
			부엌	벽돌스레트	12.1			
			화장실	벽돌스레트	9.9			
			부엌	벽돌슬라브	18.9			
			창고	천막	5.6			
			창고	목조스레트	8.6			
5	간석동	375-2	사무실	철판	5.4	이흥균	남동구 간석동 360-7	
6	간석동	398-3	방	블럭기와	33.6	최미정	남동구 간석동 398	
			방	블럭스레트	10.8			
			거실	블럭기와	17.4			
			가게	블럭스레트	30.5			
			가게	블럭기와	15			
			부엌	블럭기와	10.8			
			부엌	블럭스레트	6.8			
			방	블럭기와	4.5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화장실 창고/보일러 현관 식당 화장실 채양 바닥 장독대 담장	블럭스레트 스레트 블럭스레트 함석 블럭스레트 스레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조립식	4.94 8 7.02 2.6 2.2 5.5 6 5 15.3			
7	간석동	360-12	방 부엌 거실 작업장 창고 바닥 채양 바닥 담장 방 방 부엌 창고 창고 보일러실 가추	블럭기와 블럭기와 블럭기와 블럭기와 블럭기와 보도블럭 스레트 콘크리트 블록 블럭스레트 합판스레트 블럭스레트 블럭스레트 블럭스레트 목조스레트 선라이트	45.3 29.9 8.4 11.3 5.8 30 29 22.4 19.2 37 8.6 19.6 3.4 12.1 7.8 7.5	고영준	서울 구로구 오류동 145-21 수림 나/205	
8	간석동	398-3	방 부엌 화장실 창고 가추 창고 부엌(주방) 건사 창고	블럭스레트 블럭스레트 블럭스레트 목조합판 목조선라이트 블럭스레트 블럭스레트 목조스레트 블럭스레트	102.2 51.7 6.6 3.6 10.3 3.6 8.9 5.6 0.5	노승천	남동구 간석동 398-3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9	간석동	360-5	방	벽돌기와	40	이도순	남동구 간석동 339-4	
			방	목조스레트	30.5			
			창고	목재스레트	19.4			
			창고	목재합판	8.3			
			화장실	블럭스레트	1.8			
			건사	블럭스레트	4.7			
			건사	목재합판	2.1			
			담장	스레트	5.3			
10	간석동	360-1	작업장	합판스레트	217	김태호	연수구 연수동 536 동남아파트 104-602	
			작업장	블럭스레트	52.7			
			방	합판스레트	7.7			
			부엌	합판스레트	4.5			
			창고	합판스레트	9.6			
			채양	스레트	49.3			
			바닥	콘크리트	5			
			사무실	합판스레트	105.7			
			작업장	철판스레트	348.4			
11	간석동	398-3	창고	철판스레트	.43	최현우	계양구 용정동 213-2 두산아파트 303-2102	
			방	벽돌기와	27.8			
			거실	벽돌기와	15.4			
			욕실	벽돌기와	7			
			부엌	벽돌기와	11.2			
			채양	스레트	29.6			
			다락	벽돌기와	11.2			
			장독대	콘크리트	4.2			
12	간석동	178-2	담	조립식	65.4	조원희	남동구 구월동 260-5 동아아파트 3-805	
			사무실	목조스레트	34.8			
			작업장	목조스레트	128.4			
			작업장	목조천막	71.3			
			화장실	목조합판	2.4			
13	간석동	377-1	담장	조립식	16.2	조재욱	남동구 간석동 377-1	
			주택	벽돌스레트	243			
			현관	벽돌조슬라브	3			
			담장	벽돌	4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3-7호

의약품판매업허가취소에따른청문통지서공시송달공고

우리보건소에 허가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허가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3. 6.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청문당사자

- 가. 업 소 : 한국생약
- 나. 대 표 자 : 김 민 기
- 다.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17-2
- 라. 업 종 : 의약품도매상
- 마. 허가 번호 : 제8호

2. 청문의 이유

- 허가된 소재지내에 시설물 멸실에 따른 허가 취소

3. 청문내용

- 가. 일 시 : 2003년 7월 7일 14:00
- 나. 장 소 : 남동구보건소 3층회의실
- 다. 청문주재자 :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4. 기타

-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직접 청문에 응하거나 서면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일시에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